

# 포이에마 예수교회 정관

제정 2011.01.01.

개정 2026.01.18.

## 제1조 (명칭)

본 공동체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이하 "본 교회"라 한다)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POIEMA JESUS CHURCH'이며 약칭 'POIEMA'로 표기 한다.

## 제2조 (정체성 및 소속)

본 교회는 참된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인들로만 이루어진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공동체로서, 초교파적 특성을 지키기 위하여 특정 교파에 소속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 제3조 (위치)

1. 본 교회는 예배장소와 행정본부를 두며, 예배장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78(방이동 89-22) 보성중고등학교 내와 행정본부는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2층 비전센터에 두는 것으로 한다.
2. 예배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배장소를 이전하고 본 교회를 유지하도록 한다. 단, 임시 예배장소의 결정 및 사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제4조 (목적 및 비전)

1. 구약 및 신약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과 교리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신 사명에 따라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유지한다.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실천과 생활화를 이루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한다.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4.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로서 본 교회 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교회는 다음 각 호의 비전을 설정한다.
  - ①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 ② 내 이웃의 가치를 알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교회
  - ③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교회
  - ④ 한국교회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 ⑤ 소외된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 ⑥ 차세대 기독 인재양성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

### 제5조 (실천지침)

본 교회는 제4조의 목적과 비전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정하여 권고한다.

1. 교회의 모든 직분은 임기제로 한다.
2. 본 교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3. 본 교회의 모든 예산과 결산은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 제6조 (신앙고백)

본 교회의 교인은 다음 각 호의 기재된 신앙고백을 신앙의 지침으로 삼는다.

1. 우리는 신약 및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본에 오류가 없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완전한 계시요, 모든 신앙과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칙임을 믿는다.
2.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완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일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심을 믿는다.
3.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음을 믿는다. 그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 제물로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과 대변자로 사역하고 계심과 재림을 믿는다.
4.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주 예수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현세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거듭난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힘을 주셔서 경건한 삶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는다.
5.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타락하여 멸망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으로 구원을 얻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6.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의 부활만이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로움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다.
7.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현시대 동안 교회가 지켜야 할 성례임을 믿는다 그러나 성례자체가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고 믿는다.
8. 우리는 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두 연합하여 하나되어야 함을 믿는다.

9. 우리는 참된 구성원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0. 우리는 예수그리스도가 주시오,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사역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11.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 '복된 소망' 이 신앙인의 삶과 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12. 우리는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믿는다.

#### **제7조 (교인의 자격)**

1. 누구든지 제 4조의 목적 및 비전에 동참하고 제5조의 실천지침을 실행하며 제6조의 신앙을 갖고자 희망하는 자는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 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본 교회에 등록된 자는 담임목사가 예배시간이나 회의시간에서 본 교회에 등록했음을 선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다.

#### **제8조 (교인의 자격 상실)**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경우에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타 교회로 이적한 때
3. 징계위원회에서의 출교결정이 교인총회에서 공표된 때
4. 질병, 군입대, 지방 또는 해외 근무, 외국 유학,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본 교회 정기 예배에 출석하지 않을 때

#### **제9조 (교인의 권리)**

1. 본 교회 교인은 교회 운영의 주체로서 본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교회 교인은 본 정관을 비롯한 본 교회 규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은 정기 예배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출석한 이후부터 부여되며 이 사실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확정된다.
3. 본 교회 교인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교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다.
4. 본 교회 교인은 본 교회의 재산 (동산, 부동산 및 유·무형 재산)을 총유로 소유한다.

#### **제10조 (교인의 의무)**

1. 본 교회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2. 본 교회 교인은 본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3. 본 교회 교인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을 숙지하고 교회와 개인의 삶에

-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4. 본 교회 교인은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의 신앙에 따라 헌금과 봉사를 통해 본 교회의 운영과 사역에 참여하여야 한다.
  5. 본 교회 교인은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 (교인의 징계)

1. 본 교회는 주 예수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각종 세상의 악과 거짓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하여 본 정관에 벗어난 언행 및 위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인의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근신 : 교인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 ② 정직 : 직분자의 경우 해당 직분 수행의 일시적인 정지
  - ③ 해직 : 직분자의 경우 해당 직분의 해지
  - ④ 출교 : 교인의 자격 박탈
  
2.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 중 출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한다.
  - ① 하나님을 명백히 배도한 경우
  - ② 교회 내에서의 의도적인 불화 또는 분열 조장이 심각한 경우
  - ③ 명백한 이단 교리를 따르거나 이를 전파한 경우
  - ④ 반복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경우
  - ⑤ 기타 주님과 본 교회의 이름을 크게 실추시킨 언행을 한 경우
  
3. 본 교회 교인에 대하여 제1항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 ① 징계 혐의 사실의 조사와 징계위원회에의 기소를 담당할 교역자 1인과 장로 2인을 상임 조사위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 ② 상임조사위원은 교인의 본 정관에 벗어난 언행 및 위법 등에 관한 인지, 고소, 고발, 자수, 밀고, 고지, 투서, 또는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단 교인 명의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③ 상임조사위원은 교인의 본 정관에 벗어난 언행 및 위법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 및 징계위원회에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④ 상임조사위원은 징계 혐의 사실이 교인의 개인적인 문제인 경우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교인 간의 문제인 경우에는 최대한 당사자간의 화해로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그 해결된 사안은 비밀로 한다.
  - ⑤ 상임조사위원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조사 결과 혐의사실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이때 기소여부는 상임조사위원의 과

반수의 동의에 의한다.

- ⑥ 운영위원회에서 5명의 교인을 징계위원회로 임명하고, 상임조사위원회의 기소가 제기되면 징계위원회는 심의부로서, 상임조사위원은 기소자로서, 고소인 등은 참고인으로서, 혐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기소사실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 ⑦ 징계위원회는 해당 기소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재적인원의 5분의 3이상의 동의에 의한다.
- ⑧ 징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결정 사항을 교인총회에서 발표한다.
- ⑨ 교인총회에서 공표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에게 그 기속력이 미친다.

### 제12조 (직분자)

- 1. 본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한다.
- 2. 본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본 정관을 준수하고 예배 및 각종 교회업무와 행사에 충실해야 하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13조 (목사)

-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여기서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심방, 성례전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하며 신약 및 구약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성직자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2. 본 교회 목사의 자격은 목회전문가 정규교육을 받아 목사로 세워진 자로 디모데전서 3:2-7과 디도서 1:6-9의 기준에 합당하고 본 정관에 명시된 각종 믿음의 교리와 규례, 규정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 3.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하며, 본인과 본 교회를 위하여 성경연구와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4조 (담임목사 및 부목사)

- 1.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영적 생활과 정기적인 예배, 교육과 양육, 그리고 본 교회의 두 가지 의식인 성례와 성찬 등을 전반적으로 집행하거나 감독한다.
- 2. 담임목사는 필요에 따라 외부 강사를 선별하고 초청하여 본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할 수 있다.
- 3. 담임목사는 필요에 따라 동역할 전도사, 전문사역인 등 부교역자를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 4.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3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인 총회에 발의하고 교인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청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3인 이상으로 추천하여 교인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담임목사 청빙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담당한다.
6. 담임목사가 필요에 따라 동역할 부목사를 세울 수 있으며, 부목사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부교역자에 관한 임명 절차와 규정을 따른다.
7.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유고 시 본 정관에서 정한 담임목사의 직을 대행하며, 본 교회 담임목사의 청빙 시 본 교회 담임목사의 후보자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8.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9. 담임목사의 임기는 시무일로부터 6년이며, 교인총회의 신임투표를 거쳐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10. 담임목사는 6년 시무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 내에서 안식할 수 있다.
11. 다음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담임목사를 해임한다.
  - ① 영적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한 경우
  - ② 현저한 직무유기, 배임 또는 횡령의 경우
  - ③ 심히 부도덕한 행위를 범한 경우
  - ④ 국법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2. 담임목사로서 15년 이상 시무한 후 정년으로 은퇴한 목사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은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 (장로)

1. 장로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위하여 교인을 살피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도의 본이 되어 교회를 다스린다. 단, 장로는 시무장로, 협동장로, 은퇴장로로 구분한다. 은퇴장로는 교회행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각 부서의 장이 되지 못한다.
2. 타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현직)이 부여된 자는 본 교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1년뒤 협동장로로 봉사한다. 시무장로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담임목사가 정규 예배시간에 시무장로로 임명한다.
  - ① 디모데전서 3:1-7, 디도서 1:6-9, 디도서 2:2-3절에 명시된 자격을 구비한 자로 교역자회 또는 장로회가 추천한 자
  - ② 시무 년도에 만 50세 이상이 되는 자
  - ③ 본 교회 교인 등록 후 3년 이상 본 교회에서 봉사한 자
  - ④ 권사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한 자
  - ⑤ 성경에서 정한 십일조를 성실히 내고 있는 자
  - ⑥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시무장로의 임기는 시무 시작일로부터 5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4. 시무장로는 그 임기를 마치거나 정년으로 퇴임과 동시에 은퇴장로가 된다.
5. 본 교회는 본 교회 자치기관으로서 본 교회 운영과 봉사 및 구제활동 등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하기 위하여 장로들로 구성된 장로회를 둘 수 있다.

#### **제16조 (권사)**

1. 권사는 교회의 신령한 유익을 위하여 교인을 잘 살피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도의 본이 되어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일에 종사한다.
2. 권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직분이 부여된 자는 본 교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1년 뒤 권사로 봉사한다.
  - ① 디모데전서 3:1-7, 디도서 1:6-9, 디도서 2:2-3절에 명시된 자격을 구비한 자로 교역자회 또는 장로회가 추천한 자
  - ② 만 40세 이상이 되는 자
  - ③ 본 교회 교인 등록 후 3년 이상 본 교회에서 봉사한 자
  - ④ 집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한 자
  - ⑤ 성경에서 정한 십일조를 성실히 내고 있는 자
  - ⑥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본 교회는 본 교회 자치기관으로서 본 교회 행정과 교인들에 대한 영적 유익 등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하기 위하여 권사들로 구성된 권사회를 둘 수 있다.

#### **제17조 (서리집사)**

1. 집사는 교역자의 치리 아래 교회 운영업무와 봉사 및 구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종사하며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
2. 집사는 본 교회 등록한 시무년도에 만 30세 이상이 되는 세례교인 중에서 디모데전서 3:8-13절의 기준에 합당한 자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단, 타 교회에서 이미 집사 직분이 부여된 자는 본 정관에 따라 집사 직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3. 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담임목사의 재임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 (본 교회 조직)**

본 교회 조직은 본 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교인총회와 교인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심의 및 논의하고 예산을 기획 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목회를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구성된다.

#### **제19조 (교인총회의 기능과 회원 자격)**

1. 교인총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의결 및 승인한다.
  - ① 담임목사의 청빙 및 해임

- ② 교인총회 임원의 선출
  - ③ 외부 감사의 선임
  - ④ 예산과 결산의 승인
  - ⑤ 감사보고의 승인
  - ⑥ 주요재산의 취득, 갱신 및 변경과 처분
  - ⑦ 본 교회 소속의 변경 및 가입
  - ⑧ 본 교회 예배장소의 변경
  - ⑨ 본 교회 조직의 신설 및 변경
  - ⑩ 기타 본 교회 정관 및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
  - ⑪ 본 교회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⑫ 교인 징계의 재심의
  - ⑬ 임원단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승인
  - ⑭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승인
  - ⑮ 기타 교인총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의한 안건
2. 본 교회의 교인총회 회원은 본 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뒤 1년이 경과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 **제20조 (교인총회의 임원)**

1. 교인총회는 교인총회의 진행, 본 정관에서 정한 권한의 행사, 폐회 중에 교인총회의 임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된 임원단을 두도록 한다.
2. 임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교인총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의장은 교인총회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무, 서기, 및 감사는 의장이 추천하여 교인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

#### **제21조 (교인총회의 의결 정족수)**

본 정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22조 (교인총회의 소집 및 공고)**

1. 교인총회는 의장이 회의 개최일 일주일 전에 후보와 강단을 통하여 안건과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본 정관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없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교인총회의 결의 또는 교인총회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의 서면 요청 또는 총회회원의 10분의 1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제2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교인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심의 및 논의하고 예산을 기획 조정하는 집행기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교인총회가 위임한 임무를 대행한다.
  - ① 운영위원회 임원의 선출
  - ② 부서의 설치, 분할, 폐지 및 통합
  - ③ 본 교회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본 교회 정책적 사안에 관한 사항
  - ⑤ 교인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집행
  - ⑥ 사업 및 부서 업무 심의
  - ⑦ 재정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⑧ 부서별 예산안 심의 및 조정
  - ⑨ 특별예산 및 특별지출에 관한 사항
  - ⑩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⑪ 본 교회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의 수립 및 심의
  - ⑫ 정관에 위임하거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⑬ 직분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⑭ 부목사 및 부교역자에 대한 임명 동의
  - ⑮ 부목사 및 부교역자에 대한 해임 요구
  - ⑯ 본 교회의 행정 본부와 예배장소 심의
  - ⑰ 임시 본부 및 임시 예배장소의 심의 및 의결
  - ⑱ 교인의 피선거권에 관한 심의
  - ⑲ 교인총회에 중요 안건의 부의
  - ⑳ 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의결
  - ㉑ 기타 교인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㉒ 교인 징계관련 상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
  - ㉓ 징계위원회 위원 임명
  - ㉔ 담임목사에 대한 청빙위원회 구성
  - ㉕ 담임목사 후보자에 대한 교인총회 승인요구
2.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각 부서의 장, 교인총회(의)장으로 구성된다.
3.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을 위해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 특임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임원)**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회의 사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서기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담임목사로 하고 서기는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단, 위원장의 부재시 지명한 부목사 1인이 대행한다.

### 제25조 (운영위원회의 성수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 회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수되고 본 정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개최)

1.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단, 운영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27조 (부서)

1. 운영위원회는 본 교회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2. 각 부서의 소관업무 및 권한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교회가 정한 교육을 마친 교인은 모두 각 부서에 속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3. 본 교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조직된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부 : 교육과 교회학교에 관한 업무
  - ② 봉사부 : 주차안내, 시설관리,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
  -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와 구제에 관한 업무
  - ④ 예배부 : 예배, 성례, 찬양 및 새가족에 관한 업무
  - ⑤ 재정부 : 재정에 관한 업무
  - ⑥ 친교부 : 식사, 친교에 관한 업무
4. 각 부서의 부서장은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교인 중에서 장로회의 동의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5. 각 부서는 부서장의 지휘 아래 소관업무 및 권한 내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며, 월 1회 이상 부서회의를 개최한다.
6. 각 부서는 각 부서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사업수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사무처)

1. 사무처는 본 교회의 목회를 지원하고 교인 및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간사로 구성된다.
3. 사무처장과 간사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 제29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1.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2.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3. 모든 회의는 담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지정한 부목사 또는 교역자, 담임목사가 지정한 장로 또는 부서장이 주재하여야 한다.

### 제30조 (투표방식)

1.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모든 의결에 필요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모든 투표에는 목사 또는 교역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 제31조 (재정운영의 원칙)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운영의 원칙을 설정한다.

1. 청지기적 사명 :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2. 균형 : 재정수입의 50%는 본 교회를 위하여 나머지 50%는 본 교회 밖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지출 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있게 지출한다.
3. 소유의 제한 : 어떠한 명목이든지 예배장소를 위한 건물은 소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교인총회의 승인(3분의 2이상 찬성)을 거쳐 예배를 위한 장소 및 행정본부를 소유할 수도 있다.
4. 총액표시 :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 해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5. 투명성 :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든지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6. 건전성 : 재정구조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 ① 본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인 자금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총회의 승인을 얻어 단기간 차입할 수는 있다.
  - ② 회계기간 별 수입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출한다. 매 회계연도별로 잉여자금이 남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zero base),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지출균형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적립(특수 목적 적립금, 교회 임차적립금) 한다.
7. 문서화 : 재정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회계연도 종료후 문서로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단, 편리에 따라 결재권자의 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도 있다.
8. 기능의 분리: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기능, 집행하는 기능, 기록하는 기능 및 이를 사후 감독하는 기능은 각각 분리한다.

### **제32조 (수입)**

본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및 기타수익(잡수입)으로 한다.

### **제33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4조 (회계처리의 방식)**

본 교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5조 (예산)**

본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교인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교인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 **제36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
2. 예비비 지출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7조 (결산과 공시)**

본 교회는 결산 감사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1. 예산내역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수입/지출 내역서)
4. 고정자산 및 비품 대장
5. 재산변동내역서
6. 감사보고서

### **제38조 (재정 담당자)**

1. 재정담당자는 재정부원으로서 무흠 입교인 중 재정관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이 없는 경우 재정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정담당자는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나님나라 재정을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39조 (감사)

1. 교인총회의 감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 후 3년 이상인 교인 중에서 2인 이상을 두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교인총회의 감사가 내부 감사를 겸임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의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감사(준칙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교인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시 임시 감사를 할 수 있다.
3. 감사는 늦어도 교인총회 1개월 전 감사계획을 공고 한 후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사무처에 보관한다.
4. 본 교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감사의 감사보고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 회계연도 말 출석 교인수가 2,000명 이상인 경우 기독교인회계사를 외부감사로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0조 (재산관리)

1. 본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2. 본 교회는 교인총회 승인 없이 부동산의 취득, 처분,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3. 본 교회가 취득하는 재산은 교인 총유로 한다. 단 본 교회 출석 교인수가 2년이상 계속하여 1,500명 이상인 경우 법인으로 등록하고 법인명의로 소유한다.
4. 본 교회가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본 교회명의 또는 본 교회법인명의로 등록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5. 재정담당자는 매년 교회의 재산변동내역을 결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재산관리대장(고정자산 및 비품대장)을 비치하여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제41조 (교역자 등에 대한 사례 및 복리후생)

1. 교인총회에서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교회 유급직원을 제외한 일반 성도의 봉사 에 대하여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는 부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사례비를 의결하며 중산층의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금액을 사례비로 결정하여야 하고 가족사항과 책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와 그 외 교역자가 교회 사역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4.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임하는 목사와 전임교역자 및 유급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로 적립하여야 한다.
5. 교역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택지원금을 적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 42조 (세금 등)

1. 본 교회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교회가 정직한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세무재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의결하여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

#### 제 43조 (해산)

본 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44조 (정관의 변경)

본 교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여 교인총회에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세부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 - 부 칙 -

#### 제45조 (시행)

1. 본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정관(장로명칭 분류, 교인총회의 체계화, 운영위원회 부서장 업무조정, 상조부 신설, 예배당의 소유의 탄력성 확보, 회계용어의 현실화, 예비비의 상향조정 등)은 201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정관(부목사 임면, 운영위원회 부서장 선임방법, 운영위원회 부서조직 개편-친교부 신설, 선교문화부·상조부 폐지)은 201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정관(운영위원회 부서조직 개편-선교부 신설, 사회부 폐지)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정관(교인총회의 성수 및 의결정족수, 교인총회의 소집 및 공고, 운영위원회의 개최)는 2023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정관(교회 위치, 교인의 징계, 담임목사의 연임, 안식, 해임, 장로, 권사, 서리집사의 나이, 교인총회의 임원, 운영위원회 부서 업무 조정, 투표방식, 감사, 교역자 사례 등)은 202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정관(운영위원회의 기능 5항 신설, 감사 3항)은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정관(담임목사 및 부목사 12항 신설과 교인총회의 기능과 회원 자격의 1호의 ㉔과 교인총회의 기능과 회원자격)은 202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정관(제3조의 행정본부의 위치, 제11조의 징계위원회 재적인원, 제31조의 재정운영, 제42조의 세금)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